

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제3730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5. 11. 17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26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출연(출자)대상 :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(농업발전계정)
나. 출자출연의 필요성 :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 인력의 육성 및 농업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함
다. 출자출연 주요 사업 내용 :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저리로 농어업 경영자금, 시설자금 등 융자 지원

3. 관계법령

가. 「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」

4. 예산수반사항

- 가. 출연 예정금액 : 50백만원 이내
나.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

(단위: 백만원)

2026년도 시 출연금	2025년도 시 출연금	전년대비 증감액
50	50	0

소관 실·과·소		농업정책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농업정책과장 장 오 규
	팀장 직위·성명	농업정책팀장 이 상 국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농업주사보 소민정(☎4254)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「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5조제2항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 및 농업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함

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의 안정적 기반 구축 및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확보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	계
총 소요액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
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금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

※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- 예산법무과 협의필

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

-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과장 장오규 팀장 이상국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
세 입						
지방세수입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,000
세 출						
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,000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,000
	지방세수입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그 밖의 사항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